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1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이해민 · 정춘생 · 안도걸
이훈기 · 강경숙 · 김준형
차규근 · 김재원 · 이학영
박은정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

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의 행위”를 “제5호의2, 제12호의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금지행위) ① (생 략)</p> <p>1. ~ 11. (생 략)</p> <p><u><신 설></u></p>	<p>제50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 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u></p>
<p>제99조(벌칙) 1. ~ 4. (생 략)</p> <p>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 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 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및 같은 항 <u>제5호의2의 행위</u>는 제외한다)를 한 자</p>	<p>제99조(벌칙) 1. ~ 4. (현행과 같 음)</p> <p>5. ----- ----- ----- ----- <u>제5호의2, 제 12호의 행위</u> ----- -----</p>